#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2

발의연월일: 2022. 9. 6.

발 의 자:이원택·주철현·위성곤

이학영 · 김승남 · 한병도

유정주 · 신정훈 · 최인호

어기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53,535원 대비 21.9%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 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 6천 톤~386만 7천 톤으로 전망돼, 21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 8천 톤~355만 1천 톤으로 공급과

잉 규모가 26만 톤~32만 톤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음.

또한 정부는 쌀목표가격제 폐지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수급안전장치를 법제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락하는 쌀값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농민단체 등은 미곡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ㆍ제5항,제16조의3 신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생산량"을 "생산량, 예상생산량"으로, "보관"을 "보관, 단경기·수확기·평년 가격의 기준"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 이하를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하여야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 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 이 예상되는 경우
- 2.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

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 이하를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하여야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 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 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 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 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 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 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다.

⑥·⑦(생략) <신설>

5
<u>생산량, 예상생산량</u>
마카 - 미국리 스윙리 립니
<u>보관,</u> 단경기·수확기·평년
<u>가격의 기준</u>
<u>.</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10 0분의 85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